

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

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4일
농 촌 진 흥 청 장

1. 선발예정인원 : 농업연구사 28명

계 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인원		
			계	일 반	장애인 구분모집
합 계			28	27	1
연구사	농업연구	작 물	8	8	
		농 업 환 경	3	3	
		작 물 보 호	5	5	
		농 공	2	2	
		원 예	6	5	1
		축 산	4	4	

2. 시험과목 : 필수 7과목

※'영어'와 '한국사'는 '능력검정시험'으로 대체

직렬	직 류	1차 시험과목	2차 시험과목
농업연구	작 물	국어 (한문포함), 영어 (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체), 한국사 (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)	분자생물학, 재배학, 실험통계학, 작물생리학
	농업환경		식물영양학, 토양학, 농업환경화학, 실험통계학
	작물보호		식물병리학, 재배학, 작물보호학, 실험통계학
	농 공		물리학개론, 농업기계학, 농업시설공학, 응용역학
	원 예		작물생리학, 재배학, 원예학, 실험통계학
	축 산		축산식품가공학, 가축사양학, 가축번식학, 가축육종학

3. 시 험 방 법

가.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(사지선다형, 각 과목당 20문항)

나. 제3차시험 : 면접

4. 응 시 자 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 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음

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접수 및 취소기간 (접수시간 : 09:00~21:00)	구 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접수기간 : 2.14.~2.18. (취소마감일 : 2.23. 21:00)	필기시험	4.14.	4.23.	5.10.
	면접시험	5.10.	5.25	6.7.

-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만 공고하며,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농촌진흥청 공개경쟁채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시스템
(<http://gongchae.rda.go.kr>)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
- 접수시간 : 2022.2.14.(월) ~ 2.18(금) 기간 중 09:00~21:00 접수

- 기 타 : 응시수수료(7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됩니다.
- 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)를 첨부하셔야 합니다(JPG형식, 1MB미만)
- 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형식, 3.5×4.5cm)이 필요하며, 원서접수일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www.rda.go.kr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류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 취소마감일 21: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7.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※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처 상담센터 ☎ 1577-0606)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7을 참조)

구 분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산비율	5%	3%

라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「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」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되며,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표기 합니다.
- 또한,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(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)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(gongchae.rda.go.kr)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※ 가산점 등록기간 : **2022.4.23.(토) ~ 4.27.(수)**

※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8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명		토플(TOEFL)		토익 (TOEIC)	텡스(TEPS)	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	PBT	IBT		'18.5.12. 전 시험	'18.5.12. 이후 시험		
연구사 공채	일반	530	71	700	625	340	65(level2)	625
	청각장애인	352	-	350	375	204	-	375

※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 2·3급)'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(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)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7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 - 2017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 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)에 게시된 '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제출 공고문'을 확인하시고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수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(gongchae.rda.go.kr)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.
[추가등록기간 : 2022.4.18.(월)~4.22.(금)]

9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**2017.1.1. 이후**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정번호, 인정 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.
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성적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.
-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(gongchae.rda.go.kr)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.
[추가등록기간 : 2022.4.18.(월)~4.22.(금)]

10.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가. 대 상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

나. 채용목표 : 30%

-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5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며, 상기 합격자 중 양성평등의 합격자가 모두 채용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어느 한 성(性의)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 3점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
- ※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(性)을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
- ※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균형인사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 제113호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1. 기 타 사 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·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영어·한국사 능력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소명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를 통해 공고합니다. 또한,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마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(063-238-0235, 02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《참고 :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」 별표7》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직 렌	직 류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농업연구	작 물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 기 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농업	
	농 업 환 경	기술사: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, 조경, 산림,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 기 사: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기상, 유기농업 산업기사: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유기농업	
	작 물 보 호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 기 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농업	
	원 예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조경, 식품 기 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조경, 식품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조경, 식품, 유기농업	
	축 산	기술사: 축산, 식품 기 사: 축산, 식품 산업기사: 축산, 식품	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: 수의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: 가축인공수정사

	농 공	기술사: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차량, 건설기계, 용접, 금형, 금속제련, 비파괴검사, 수자원개발, 농어업토목, 조경, 기계안전, 화공안전, 전기안전, 건설안전, 소방, 가스, 품질관리, 인간공학, 소음진동, 금속재료, 토질 및 기초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: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 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누설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 인간공학, 소음진동, 에너지관리, 자동차정비, 기계설계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: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 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 소음진동, 에너지관리, 기계설계, 자동차정비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	기사자격증 가산비 율적용: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
--	-----	---	---

비고: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